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-활동보조 가산급여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종증 장애인(인정점수 440점 이상)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여 활동보조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		
사업비 (당해년도)	526,087천원	(국비)303,245천원	(시비)222,842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80,403천원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장애인자립지원과	안찬율 2133-7470	김지형 2133-7472	차영선 2133-7473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303,245) 519,479	(x303,245) 526,087	(x-) 6,608	(x-) 1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303,245) 519,479	(x303,245) 526,087	(x-) 6,608	(x-) 1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활동보조 가산급여 526,087,000원	=	526,087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여 처우개선

□ 사업근거

- 장애인활동지원사업
 -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,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 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 -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2조

□ 사업내용

- 중증장애인 가산수당
 - 지원대상 :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
 - 지원급여 : 시간당 주간 : 680원, 야간 및 공휴일 : 1,020원 가산 지급
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2018. 12월
- 사업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

□ 추진경위

- '16년 3월 :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526,087	
사업계획수립	2018.01~2017.02		활동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
사업비 교부	2018.01~2017.12	526,087	활동지원 사업비 교부
서비스 제공기관 점검	2018.01~2017.12		서비스 제공기관 점검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
2016년도	○ 장애정도 고려하여 가산된 시간당 급여비용('16년 최초) : 시간당 680원 가산
2017년도	○ 장애정도 고려하여 가산된 시간당 급여비용('16년 최초) : 시간당 680원 가산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최종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추가로 최종증 장애인에 대한 매칭효율화 기여
-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